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영태 의원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

발 의 자: 김영태 의원(1인)

찬 성 자: 강승수·김영길·김정도·김재우
박세채·이명희·이정희·추은희
허민근 의원(9인)

1. 제안이유

구미시의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 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개정

나. 책무(안 제3조)

다. 향토유산위원회(안 제4조~제11조)

라. 향토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안 제12조~제15조)

마. 지정향토유산의 관리 및 보호(안 제16조~제20조)

바. 향토유산 교육 등 지원(안 제21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제13조
-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제26조
-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2조
- 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부서검토: 문화예술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의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 전승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 구미시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것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2. “향토자연유산”이란 구미시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하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식물·지형·경관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청장 및 경상북도지사가 지정 또는 등록한 유산 이외에 구미시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말한다.
4. “지정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청장 및 경상북도지사가 지정 또는 등록한 유산 이외에 구미시장이 지정한 향토유산을 말한다.
5.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향토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6. “보호물”이란 지정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7.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유산 및 향

토자연유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에 있어 원형을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소유자는 구미시의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 관리 및 활용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2장 향토유산위원회

제4조(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 향토유산 보호물,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 또는 경상북도 지정무형유산의 전승 지원, 향토무형유산 및 전수인·전수단체에 대한 지정·인정·취소·해제, 구미시 향토무형유산 전수인 및 전수단체에 대한 보전·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말소·보존·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향토유산 보존·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

② 위원회는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체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을 수 없게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향토유산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역사, 문화, 건축, 자연 등 관련 분야의 학계 전문가

나. 국가유산 보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

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될 때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품위 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향토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제1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전문위원을 1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임명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국가유산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3장 향토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12조(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의 지정)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지정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인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지정서 발급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3조(향토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향토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인위적·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할 경우, 그 날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조치의 적정성

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지정 향토유산으로서 보호·관리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지정 향토유산이 국가지정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경상북도지정유산, 경상북도등록문화유산, 경상북도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 향토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15조(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와 향토유산 보호물, 향토유산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및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 소유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의 고시에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고시해야 한다.

제4장 지정향토유산의 관리 및 보호

제16조(향토유산 관리자의 지정) ① 시장은 지정향토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을 직접 관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 지정향토유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2. 지정향토유산 관련된 전문가
3. 지정향토유산이 있는 지역의 지역주민
4. 지정향토유산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지정향토유산 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구미시 시보에 고시하고 해당 향토유산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인 관리자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향토유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실태조사 및 기록화)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멸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향토유산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계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의 조사 유형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조사: 매 5년마다 향토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수리 등에 대한 조사

2. 긴급조사: 태풍, 폭우, 폭설, 산사태, 화재 등 자연적·인위적 재해 시 피해조사, 향토유산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멸실 위험에 처한 경우

③ 시장은 구미시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비지정향토유산자원을 조사하고 기록할 수 있다.

제18조(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지정향토유산의 화재, 재난 및 도난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의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향토유산 보호 인식을 높이고,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정향토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현황, 금지행위 및 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신고 사항) 제12조제3항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인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 관리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소재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4. 향토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향토유산을 반출 및 반입한 경우

제20조(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지정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 대상자 및 지원 규모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7호 서식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 지정 향토유산 보호·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제21조(지정향토유산 활용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지정향토유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정향토유산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교육과정 개설
2. 지정향토유산 홍보
3. 지정향토유산 관리 및 활용방안 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4. 지역 내 지정향토유산을 활용한 축제 및 행사
5. 지정향토유산 활용 관련 자료 수집, 조사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조사·연구·발굴·보존 및 관리에 관한 공동사업
2. 향토유산을 활용한 전시·교육·관광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향토유산에 대한 홍보 및 콘텐츠 개발
4.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홍보)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취지와 지정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향토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 신청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유산 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향토유산위원회”로 한다.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등록) ①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적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

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야생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동물·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물·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명승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과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토(문화·자연)유산 제 호

구미시 향토(문화·자연)유산 지정서

- 종 별(지정분야):
- 명 칭:
- 소재지:
- 수 량: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 제 12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 향토(문화·자연)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직 인

향토(문화·자연)유산 제 호

구미시 지정 향토(문화·자연)유산 관리자 지정서

지정 향토유산

지 정 분 야:

명 칭:

지 정 수 량:

지 정 일:

지정받는 자

이름(단체명):

주 소: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미시 향토유산 관리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직인

구미시 지정 향토(문화·자연)유산 관리대장			
지정 분야			관리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재 료			지 정 일
구 조			해 제 일
규격/크기			형식/형태
수량/면적			연대/시대
형식/형태			(제) 작 자
소재지/ 보관장소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 리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내용 및 현황 (연혁, 유래, 전설, 현황)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일자	내용	

향토(문화·자연)유산 명칭 제 호

도면 / 사진

명 칭		작성일자	
명 칭		작성일자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문화예술과

조 례 명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제13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제26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2조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주요 사항

- 조례의 제명 개정
- 책무(안 제3조)
- 향토유산위원회(안 제4조~제11조)
- 향토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안 제12조~제15조)
- 지정향토유산의 관리 및 보호(안 제16조~제20조)
- 향토유산 교육 등 지원(안 제21조)

□ 검토 결과

- 근거 법령 취지에 부합함
- 향토자연유산 관련 보호체계의 추가 마련함이 타당함
- 특성이 다른 향토무형유산과 분리하여 개정함이 타당함

□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국가유산의 체제 변환에 맞추고 향토유산위원회 또한 달라지는 적용범위에 따라 심의 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성 증대
- 소요예산 :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 없음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동 조례안 제20조(경비의 보조)에 의거 향토유산을 보존·활용하는데 있어서 행정적 지원과 범위는 동조례 시행규칙을 준용
- 동 조례안 제2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각각 특성이 다른 향토유산과 관련한 사업 보조금은 산출내역 결과에 따라 예산이 달라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문화예술과 국가유산팀 박은진(☎054-480-6641)